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중 개정안

- 교무처, 기획처, 입학처, 국제처, 기숙사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편제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2028학년도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의 명칭을 ‘기계바이오공학과’로 변경하고자 함(제5조 [별표 1], [별표 2], 제50조 [별표 3])

나. ‘AI포용미래혁신’ 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학사학위 종류를 반영하고자 함(제50조 [별표 3])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사업 관련 AI포용미래혁신 융합전공 신설

융합 전공명	주관대학 (학과)	복수 전공	부전공	전공목표
AI포용 미래혁신	스크랜튼대학 국제학부	30학점	21학점	AI와 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 및 인문사회적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분석하고, 윤리적·규범적 판단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는 대안을 설계하며, 이를 사회적 의사결정과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

다. 교육부의 대학별고사 운영 협조 요청에 따라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자의 향후 본교 입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17조제6항)

라.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운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제17조의2)

마. 외국인특별전형(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관리·운영 등을 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학칙에 명시하고, 해당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위임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제17조의2제4항, 제6항)

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69조의3)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중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및 내용
제5조(학부·학과·전공 및 정원) ① 각 대학, 학부, 학과, 전공별 기준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학전형에 따라 제1항의 대학, 학부, 학과, 전공을 2개 이상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 ⑦ (생 략)	제5조(학부·학과·전공 및 정원) ① ---------- 별표 1---- ② ---------- 별표 2------ ③ ~ ⑦ (현행과 같음)	*학과 명칭 변경 반영
제17조(입학전형) ① ~ ⑤ (생 략)	제17조(입학전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본교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입학 제한 근거 신설
제17조의2(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① 입학전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 삭제 <2014.11.21.> ③ 입학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입학처 내에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를 두고,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17조의2(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① ---------- 17인 ----------위촉위원은---------- ② 삭제 <2014.11.21.> ③ ----------위촉위원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 수 정비;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신 설>	④ 외국인특별전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처 내에 외국인유학생운영위원회를 두고, 외국인유학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국인유학생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명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및 내용
④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두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교 교원과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⑤ ---------- -------위촉위원은----------	*항 번호 수정 *자구 수정
⑤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⑥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 외국인 유학생 운영위원회 ----------	*외국인유학생운영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
제50조(졸업) ① 이 학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 3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스크랜튼학부 자유전공 입학생의 학사학위는 제1전공의 학사학위로 한다.	제50조(졸업) ① ---------- 별표 3 ----------	*학과 명칭 변경 및 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학사학위 종류 반영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장 등록금	제12장 등록금 및 기숙사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제60조(등록금) (생 략)	제60조(등록금)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② (생 략)	제60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등록금의 면제) ① · ② (생 략)	제61조(등록금의 면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등록금의 반환) ① ~ ③ (생 략)	제62조(등록금의 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기숙사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및 내용
	부 칙(2026. . .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별표 3] 중 AI포용미래혁신 융합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 및 제62조의2는 2027년 3월 1일부터,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와 제50조 [별표 3] 중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0조 [별표 3]과 관련하여,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의 202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구 학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대학 | 학위의종류 | 학과 또는 전공 공과대학 | 공학사 | 휴먼기계바이오공학	

현 행

[별표 1]

대학, 학부, 학과, 전공별 기준입학정원(2028학년도) (제5조 관련)

대학	학부/학과/전공	입학정원
공과대학	· ·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 · ·	· · <생 략> · ·
	소계	432
<생 략>		
총계		3,260[76]

[별표 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28학년도) (제5조 관련)

대학	학부/학과/전공	입학정원
공과대학	· ·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	<생 략>
<생 략>		
총계		3,260 [76](307)

[별표 3]

학사학위의 종류(제50조 관련)

대 학	학위의 종류	학과 또는 전공
공 과 대 학	공 학 사	전 자 전 기 공 학 지 능 형 반 도 체 공 학 식 품 생 명 공 학 화 공 신 소 재 공 학 건 축 도 시 시 스 템 공 학 환 경 공 학 기 후 에 너 지 시 스 템 공 학 휴 먼 기 계 바 이 오 공 학
	건 축 학 사	건 축 학
(융 합 전 공)	문 학 사	인 문 경 영 인 문 예 술 미 디 어 인 문 테 크 놀 로 지
		<신 설>
	공 학 사	전공특화소프트웨어

개 정 안

[별표 1]

대학, 학부, 학과, 전공별 기준입학정원(2028학년도) (제5조 관련)

대학	학부/학과/전공	입학정원
공과대학	· · 기계바이오공학과 · ·	· · <현행과 같음> · ·
	소계	432
<생 략>		
총계		3,260[76]

[별표 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28학년도) (제5조 관련)

대학	학부/학과/전공	입학정원
공과대학	· · 기계바이오공학과	<현행과 같음>
<생 략>		
총계		3,260 [76](307)

[별표 3]

학사학위의 종류(제50조 관련)

대 학	학위의 종류	학과 또는 전공
공 과 대 학	공 학 사	· 기 계 바 이 오 공 학
	건 축 학 사	· · ·
(융 합 전 공)	문 학 사	· ·
		A I 포 용 미 래 혁 신
	공 학 사	· · · · · · · · · ·

대학원 학칙 중 개정안

- 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간호대학원 신설에 따른 대학원 수를 현행 설치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제1조)

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합격 등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 사유와 세부사항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10조)

다. 해외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추가 휴학 대상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에 따른 추가 휴학기간을 자녀 1명당 최대 2학기까지 허용하고자 함(제15조제3항)

라. 통역번역학과 통합과정 신설에 따른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을 명시하고자 함(제22조 [별표 4])

마. AI 활용 연구의 확산에 따라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AI 연구윤리교육 이수 요건을 신설하고, 적용 대상 대학원을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제31조)

대학원 학칙 중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및 내용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대학원 등 15개 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16개 ----------	*간호대학원 신설에 따른 대학원 수 현행화
제10조(입학허가)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허가) ① ----------	*항 번호 신설
<신 설>	② 총장은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입학전형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입학허가 취소 근거 및 위임 근거 신설
<신 설>	③ 제2항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일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총장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는 이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통역번역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4학기, 특수대학원은 3학기),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본교와 복수학위 수여 협약을 맺은 해외대학 복수학위 취득 예정인 석사학위과정생 : 2학기 2.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 2학기	제15조(휴학) ① ---------- ② ---------- ③ ---------- 1. ---------- 취득을 위한 휴학 : ------- 2. ---------- : 자녀 1명당 2학기	*해외 복수학위 취득 관련 휴학 대상 확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자녀별 허용기간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및 내용
3. 군복무로 인한 휴학 : 해당 의무복무기간 4. 재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지정한 학기(단, 대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5.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총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승인한 학기(단, 재학연한만료예정일로부터 1학기 전까지에 한하여 연장을 인정한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하 “논문제출연한”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학생의 휴학의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20.3.20.>	3. ---------- 4. ---------- 5. ---------- ④ ---------- ⑤ (현행과 같음)	명시
제2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한 학기에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 각 전문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 ② ---------- 별표 4------	*통역번역대학원 통합과정 학기당 최대취득학점 신설
제3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신 설> 4.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제3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다만, 제4호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AI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5.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AI연구윤리 교육 이수요건 신설 *호 번호 변경
	부 칙(2026. . .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및 내용
	및 제22조 [별표 4]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는 2027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현 행

[별표4] 전문·특수대학원 학기당 취득학점(제22조 관련)

1.전문·특수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 제외)

구분		학기당 최대 취득 학점	비고
교육대학원		6	- 재학 중 한 학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취득 가능 - 교육실습 교과목(4학점)은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과 별도로 취득 가능
사회복지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및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 제외)			전공주임교수 승인 시 9학점까지 취득 가능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및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		9	
디자인대학원			
신학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간호대학원 통합간호학과			
임상치의학대학원		11	전공임상실습 포함
국제대학원		12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간호대학원 전문간호학과			
통역번역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4	
	박사학위과정	12	
	<신 설>	<신 설>	
공연예술대학원		15	1년에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법학전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1	
	박사학위과정	15	

개 정 안

[별표4] 전문·특수대학원 학기당 취득학점(제22조 관련)

1.전문·특수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 제외)

구분		학기당 최대 취득 학점	비고
교육대학원		6	- 재학 중 한 학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취득 가능 - 교육실습 교과목(4학점)은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과 별도로 취득 가능
사회복지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및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 제외)			전공주임교수 승인 시 9학점까지 취득 가능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및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		9	
디자인대학원			
신학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간호대학원 통합간호학과			
임상치의학대학원		11	전공임상실습 포함
국제대학원		12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간호대학원 전문간호학과			
통역번역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4	
	박사학위과정	12	
	통합과정	14	
공연예술대학원		15	1년에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법학전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1	
	박사학위과정	15	